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32조 및 제35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4.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공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공능유적본부장(공능유적기관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공능유적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국가유산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9.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0.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를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산청 또는 해당 공능유적기관을 피보험인으로 국가유산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공능유적기관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면적, 위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능유적기관과의 협의하여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공능유적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장비 및 소품	11.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와 박석(薄石: 평평한 돌)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2. 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와 박석(薄石: 평평한 돌)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국가유산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공능유적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3.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능유적기관과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4.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5.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반입 불가 품목(별도 허가 필요) 가.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